

의안번호 제80호

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윌일	2019. 6. 13.

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80호

제출연월일: 2019. 6. 13. 제 출 자: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과학영농 지원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

-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서 운영하는 농약안전성분석 및 토양, 수질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(안 제2조)
- 나. 분석의뢰 및 절차
 - 분석의뢰 및 절차를 규정하여 분석 수행 및 체계를 확립하도록 함.(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)
- 다. 분석 수수료
 - 분석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종합분석실을 운영코자함.(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「지방자치법」제22조 및 제116조의 2,「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: 친환경농어업법)」제11조,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의 2 및 3항, 제61조의 1항, 제62조의 1항, 제68조의 1 및 3항
- 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
- 다. 기타사항
 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- 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 - 3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19. 5월 10일~30일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- 4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 - 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 - 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과(☎ 041-635-6101)

□ 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서 운영하는 농약 안전성분석 및 토양, 수질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"종합분석실(이하 "분석실"이라 한다)" 이라 함은 농약안전성분석 실, 친환경농업관리실을 말한다.
- 제3조(운영 지원) ① 논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, 장비,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4조(운영 및 관리) ①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 센터소장(이하 "소장"이라 한다)이 한다.
 - ② 소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 - ③ 소장은 분석실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 분석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.
- 제5조(분석의뢰) 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의거 신청 및 접수하고, 별표 1의 분석의뢰 절차를 따라야 한다.
 - 단, 정부기관(중앙·지방)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.
 - ② 잔류농약분석의 경우 의뢰 시료의 수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 - ③ 분석 의뢰 시료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④ 분석 시료는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내방접수를 원칙으로 하고, 논산 시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 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.
- 제6조(분석 업무절차)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 - ② 농약안전성분석실은 국민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· 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7조(분석의 거부) ① 분석을 의뢰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.
 - 1. 분석결과를 목적 외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자료로 제출을 목적으로 할 경우
 - 2.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
 - 3. 논산시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
 - 4.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
 -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,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- 제8조(분석결과 통지) 소장은 분석이 완료될 때에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 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,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, 별지 제6호서식 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에 따른 분석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 (공문·팩스·전화 등)하여야 한다.
- 제9조(분석결과의 활용 등)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분석결과통지서를 발급 받은 자가 이를 활용할 경우 의뢰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- 제10조(정정 또는 취소) 소장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.
- 제11조(분석 수수료)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(타시군 기관, 단체 및 농가 의뢰 포함)에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별표 2와 같고, 징수절차는 「논산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- 제12조(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) ① 논산시에 영농을 목적으로 주소, 경작지를 둔 관내농업인은 별표 2의 내용에 따른다.
 - ② 학교급식지원센터, 광역직거래센터, 로컬푸드 등 논산시 정책사업 참여 농업인의 분석수수료는 전액 면제한다.
 - ③ 논산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목적의 경우는 분석수수 료를 전액 면제한다.
 - ④ 영세농 및 소규모 재배농가 중에서 별표 2의 별도기준을 충족한 자는 분석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 된	관 부 <i>/</i>	서			,	성 1	명
입	역i	량 개	발	과	장	정	동	완
안 자	과	학 영	농	팀	장	o] (74	영 6 - 8 3	진 351)

[별표 1]

분석의뢰 절차(제6조 관련)

	처리기관	처리기한 : 토양분석 15일
의뢰인	농업기술센터	수질분석 10일 잔류농약 5일
의뢰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	접수 : 해당부서	접수 : 수시
	\downarrow	
	분석실시 : 해당부서	분석 실제 소요기간
	\downarrow	
	분석결과서 작성 : 해당부서	
	\downarrow	
분석결과서 교부 ←	결과통지 : 해당부서	분석완료 즉시

[별표 2]

분석항목별 수수료 기준(제11조 관련)

분 석 항 목	분석기준	수수료(원)
(1) 농경지 토양 성분 분석 - 토양화학성분분석(유기물, P2O5, SiO2(LR), 치환성 K, 치환성 Ca, 치환성 Mg, pH, EC) - 유해성분(Hg, As, Cd, Cr ⁶⁺ ,Cu, Ni, Pb, Zn)	-	무료 무료
(2) 농업용수 성분 분석 - K, Ca, Mg, Na, Fe, Cd, As, Hg, Pb, Cr, Cl, NO ₃ , PO ₄ , SO ₄ , pH, EC, HCO ₃	-	무료
(3) 농약잔류 분석 - 관내농업인(주소, 경작지 논산) - 타시군 기관·농가	1점 1점	30,000 320,000
【별도 기준】 경영체 농지정보상 시설원예 5,000m² 이하, 시설화훼 3,000m² 이하, 노지재배 15,000m² 이하, 벼재배 30,000m² 이하 농가 중에서 소득등급(충청남도 기준표)이 22등급 이하인자	_	무료

[별지 제1호서식]

20○○년 분석의뢰 시료(접수·통보) 대장(제8조 관련)

접 수	절	실	재배	재배	부석	토지소지	대지		재배농가		의뢰인 pH 성명 (1:5)		0	M	AV	E) (r	c.Cation	ns g)	AV	EC.	선	힉	발
접 수 번 호	접 수 일	실험번호	재 배 작 목	재 배 년 수	분석 목적	읍·면·리	지번	면적	주소(댁)	전화 번호	의뢰인 성명	(1:5)	O. (k	g)	AV P ₂ O ₅ (ppm)	К	Ca		AV SiO ₂ (ppm)	EC (ds/ms)	석: 요구 (kg/	1 성 10)	빨부빨珥

⁻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 -

[별지 제2호서식]

20○○년 정밀분석시료 접수대장(제8조 관련)

	접수일			브서		지번		수은 (Hg)	비소 (As)	카드뮴 (Cd)	6가 크롬 (Cr+6)	구리 (Cu)	니켈 (Ni)	납 (Pb)	아연 (Zn)		
연번	일	성명	작목	분석 사유	연락처	E야이여의려기즈	도로명 주소		PPM(mg/kg)								
						토양오염우려기준 (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)	또 경고 금구 다기군 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)		25 이하	4 이하	5 이하	150 이하	100 이하	200 이하	300 이하		

⁻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 -

[별지 제3호서식]

20○○년 친환경농업관리실 농업용수 접수 및 분석 대장(제8조 관련)

단위(mg/ℓ)

																				g, ∞ ,					
접수 번호	접 수 일		의뢰인		재배	시료	분석 사유	구 분	pН	EC (ds/m)	к	Ca	Mg	Na	Fe	Cd	As	Hg	Pb	۵r	а	NO₃	PO ₄	SO ₄	HCO₃
버호	T.				작목	성격	사유				•	•	•	(농	업용	수 피	해하기	비농도	<u>:</u>)				•		
	일	성명	도로명 주소	전화번호	• •			채취장소(지번)	6.0~8.5	1.0 이하	-	-	-	100 이하	-	0.01 이하		_	_	0.05 이하	250 이하 (지하수)	88 이하 (지하수)	-	50 이하	50 이하
							1																		

^{*} 분석사유 : 자가활용, 친환경(유기,무농약,저농약)인증, GAP인증, 양액재배, 기타

-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 -

분석의뢰서(잔류농약)(제8조 관련)

■ 시료정보(공통)

조사구분	시료수거일	년	월	일
검사항목	시료건수			건

	성명	전화번호	주소(집)
의뢰자			
생산자			

■ 수거정보

	10-				T	1	
순번	접수 번호	품목	재배지 주소	재배 양식	수거단계	조사면적 <i>/</i> 물량	출하 예정일
1							
2							
3							
4							
5							
6							
7							
8							
9							
10							

■ 기타

수거자	소속 : 논산시농업기술센터	직급 :	성명 :	(서명)
입회자	소속 : 논산시농업기술센터	직급 :	성명 :	(서명)
본 분석결과는	의뢰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	할 수 없으며	며, 법적 효력이 없음.	
			성명	(서명)

논산시농업기술센터 농약안전성분석실

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백일헌로3 논산시농업기술센터 ☎(041)746-8357~8360

[별지 제5호서식]

20○○년 분석의뢰 시료(접수·통보) 대장(제8조 관련)

접수	접수	n 0	조사	<u>(</u>	의 5	리 저	}		생	산 지	}	분	석 경	를 비	분석	결과통보		결	재	
번호	일자	품 목	구분	성명	주	소	연락처	성명	주	소	연락처	면제	유료	수수료	결과	일자 /통보방법	담당자	팀장	과장	소장

[별지 제6호서식]

토양 비료사용 처방서(제8조 관련)

토양 비료사용 처방서											
왕	7\ P	rel				rel al					
	작물					면적					
	• •										
	토성			里 9	상통		배수	등급			
성 결과											
			BU EN	A PER		22000					
산도	유기물	유효영	인산	칼륨	칼슘	Š	마그네	· 조	기전도도		
pH(1:5)	g/kg	mg/kg	cmo	l+/kg	cmol+/k	g cı	nol+/kg		dS/m		
6.0~6.5	20~30	400~50	0.1	7~0.8	5.0~6.	0 1	.5~2.0		0.0~2.0		
					<i>d</i>						
천량 (kg , 질소질비료	/ m') 비료와 . 인산 4	· 퇴비는	the state of the s	주류만 선택 질비료	하여 사	용하십시					
	인산 집	일비료	칼리:	A STATE OF THE PARTY OF THE PAR	하여 사 볏짚 퇴비			계 분 및 비			
질소질비료	인산 집	일비료	칼리:	질비료		퇴비 우분	종류 돈분		소석회 (석회고)		
	산도 pH(1:5)	경직 토성 발결과 산도 유기물 pH(1:5) g/kg	경작지 토성 발결과 산도 유기물 유효(pH(1:5) g/kg mg/kg	경작지 토성 발결과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pH(1:5) g/kg mg/kg cmo	경작지 토성 토역 보험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pH(1:5) g/kg mg/kg cmol+/kg	경작지 토성 토양통 발결과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 pH(1:5) g/kg mg/kg cmol+/kg cmol+/k	정작지 토성 토상 토양통 결과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 pH(1:5) g/kg mg/kg cmol+/kg	정작지 토성 토양통 배수· 결과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/2 pH(1:5) g/kg mg/kg cmol+/kg cmol+/kg cmol+/kg	경작지 토성 토양통 배수등급 결과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전 pH(1:5) g/kg mg/kg cmol+/kg cmol+/kg cmol+/kg		

[별지 제7호서식]

토양 중금속 분석결과 통보서(제8조 관련)

분석기	분석기관 :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단위 : ppm(mg/kg)												
				토양오염우려기준(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)									
연번	어버 서 대 자유 분석	거자기(TIHI)		수은	비소	카드뮴	6가크롬	구리	니켈	납	아연		
연인 	성 명	작목	학목 분석 사유 경작지	경작지(지번)	도로명 주소	(Hg)	(As)	(Cd)	(Cr+6)	(Cu)	(Ni)	(Pb)	(Zn)
						4이하	25이하	4이하	5이하	150이하	100이하	2000 ਰੇ\	3000 ਰੋ\

[별지 제8호서식]

농업용수 분석결과 통보서(제8조 관련)

분석기관 : 논산시농업기술센터

□ 의뢰인 : □ 주소 : □ 작목 : □ 사유 : □ 의뢰일 :

(단위 : mg/ℓ)

구 분 (채취장소)	pH (산도)	EC (ds/m) (전기전도도)	K (칼리)	Ca (칼슘)	M g (마그네슘)	Na (나트륨)	Fe (철)	Cd (카드뮴)	As (비소)	Hg (수은)	Pb (납)	Cr (크롬)	CI (염소)	NO ₃ (질산태질 소)	PO ₄ (인산염)	SO ₄ (황산근)	HCO₃ (중탄산)
농업용수 (피해한계농도)	6.0~8.5	1.0 0 ō}	-	-	-	100 0 ō}	-	0.01 이하	0.05 이하	0.001 이하	0.1 이하	0.05 0lōł	250 이하 (지하수)	88 이하 (지하수)	-	50 01ōł	50 이하
실험 번호																	
시료 성격																	
채취 장소																	

[※] 상기 분석결과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증빙 및 제출 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
[별지 제9호서식]

잔류농약 분석결과 통보서(제8조 관련)

접수번호							
	성명			전호	화번호		
의뢰자	주소						
	성명			전호	화번호		
생산자	주소(지번)						
접수일자							
검사품목	(재배양식 :)				
검사목적							
검사항목							
	검출	검출농 (mg/k		허용7 (mg/	刊	고	
검사결과							

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논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

* 의뢰 시료의 분석결과는 포장에서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검정결과로써, 통보 받은 결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.

붙임

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약, 소 모품 확보 및 장비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이 요구됨.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·제4조 에 의거 토양, 중금속, 농업용수, 농약잔류분석을 위한 예산

나. 추계결과

○ 2019년 종합분석실 운영 소요 예산 : 119,000천원

항 목	장비유지 관리비	재료비	합계	
토양·중금속·용수분석	2,000천원	15,000천원	- 119,000천원	
농약잔류분석	2,000천원	100,000천원		

○ 2019년 이후 종합분석실 운영 소요 예산 : 119,000천원

3. 작성자

역량개발과장 정 동 완

〈연도별 증가비용 추계표〉

(단위 : 천원)

						(L 11	
	구 분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계
세 입							
,	시 비						
,	세 출	119,000	119,000	119,000	119,000	119,000	595,000
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		119,000	119,000	119,000	119,000	119,000	595,000
	재원 조달	119,000	119,000	119,000	119,000	119,000	595,000
	소 계						
의존 재원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	소 계						
자체	지방세						
수입	세외수입						
	기금이자수익금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>	기업 특별회계						
(채	기 타 무부담, 민자 등						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16조의 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□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:친환경농어업법)」 제11조

제11조(농어업 자원·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·평가)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보전과 농어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·평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6.12.2.>

- 1. 농경지의 비옥도(肥沃度), 중금속, 농약성분,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
- 2. 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
- 3. 농약·비료·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 실태
- 4. 수자원 함양(涵養),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
- 5. 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 5의2.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·소비 등에 관한 실태
- 6. 그 밖에 농어업 자원 보전 및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·평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
[제목개정 2016. 12. 2.]

□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~62조, 제68조

제60조(안전관리계획) 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·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,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,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, 그 밖에 총리령으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61조(안전성조사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·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·사용하는 농지·어장·용수(用水)·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(이하 "안전성조사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

1. 농산물

가. 생산단계: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

나. 유통·판매 단계: 「식품위생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. 수산물

가. 생산단계: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

나.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: 「식품위생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

제62조(시료 수거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·도지사는 안전성조사, 제68조제 1항에 따른 위험평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.

- 1.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·사용되는 토양·용수·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, 저장, 운반 또는 판매(농산물만 해당한다)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제68조(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·사용하는 농지·어장·용수·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 - 1. 농촌진흥청
 - 2. 산림청
 - 3. 국립수산과학원
- 4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
 - 5.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
 - 6. 대학의 연구기관
 - 7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
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(이하 "잔류조사"라 한다) 할 수 있다.